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Us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Construction Site

김윤대*, 송창근**

Yun-Dae Kim*, Chang-Keun Song**

ABSTRACT

It can be said that the interest in safety is hotter than ever, with the Severe Accident Business Penalty Act passing through a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earlier this year and going into effect in January next year.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legal application and actual field application, there are already many voices of complaints from companies. In line with this, it can be said that the efficient us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s very important, as companies are inevitable to increase their safety-related expenses. As a result,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are calculated and used as a result, analysis of the detail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for each item, comparativ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nd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in 2020 as efficiently as possible It is intended to suggest a method to enforc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Key Words : 산업안전보건관리비(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산업재해 현황(Industrial accident status), 정기점검(routine inspection)

1. 서론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 국회, 정부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건설

업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사고 재해는 여전히 전 분야에 걸쳐 넓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건설업에서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

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칭한다) 제도를 30여년 이상 전에 도입했다.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급 금액에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작업환경개선, 안전관리, 안전시설, 안전보호구, 기술지도비 등에 지출하고 이를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연구는 1988년 2월 노동부 고시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89년 2월 고시 개정되었지만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정부발주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등 관급공사에만 행정 지도 차원에서만 실시 되었었고 민간발주공사에서는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199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 건설공사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대한 근거와 법적 강제조항을 신설하였고 1991년 9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및 사용 기준을 개정·고시하여 모든 건설공사에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후 수많은 관련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 진행형인 상태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1988년부터 2020년까지 27차례에 걸쳐 매년 개정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용절감에만 편중된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과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심층적인 이해를 통하여 올바른 산업안전보건안전관리비 계상과 적절한 사용으로 경제적 이득과 근로자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도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자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안전관련 자료, 인터넷자료 검색 등을 통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정 하였으며, 또한 설문지 응답을 통해 현직 안전 관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조사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비 비교, 2020년도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현직 안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인식, 건설현장 추락 사고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고, 4장 결론 에서는 1장,2장,3장의 연구 내용을 종합하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2. 본론

2-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

에 적용한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의 종류를 산업재해보상법의 공사 분류에 의해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등 5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공사비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미만, 50억원 이상 등 공사 규모별 세 단계로 나누어 직접노무비에 재료를 합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 기준은 현장 공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이상 사용 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Table 2)는 공사 진척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Standards for Calculation of Safety Management Fees by Construction Type and Scale

공사종류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설 공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일반건설공사(갑)가 가장 많은 공사 종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선임 대상 현장은 다른 현장에 비해 적용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Standards for us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according to construction ships

공정율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이상
사용기준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상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정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일정 퍼센트 이상 사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 (개정 2020.1.23. - 고시 제2020-63호)

아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1항-8항)을 살펴보면 공사관리비나 환경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어떤 관리비로 집행해야 하는지 애매모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유선이나 질의회신 등을 하여 확실한 근거를 받아 놓고 사용해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2. 안전시설비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시설물, 장치, 자재,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과 공사 수행 도구·시설이 안전장치와 일체형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구입·수리 및 설치·해체 비용 등

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

나. 소음·환경관련 민원예방, 교통통제 등을 위한 각종 시설물, 표지

다. 기계·기구 등과 일체형 안전장치의 구입비용

라. 동일 시공업체 소속의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물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의 자재비(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후생적 근무여건 개선·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 품질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가설구조물 등의 구조검토, 안전점검 및 검사, 차량계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정기·구조 변경·수시·확인 검사 등

나.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대행 등
다. 「환경법」에 따른 외부 환경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라. 민원 처리 목적의 소음 및 분진 측정 등 소요비용

마.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 등 공사 수행 또는 건축물 등의 안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바.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

사.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를 포함한다) 구입·임차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와 무관한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해당 현장과 별개 지역의 장소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해체·운영비용

나.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

라. 안전관리 활동 기여도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다음과 같은 포상금(품)

마. 근로자 재해예방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전정보 교류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 행사비, 안전기원제 행사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수 등

나. 과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신종플루 예방접종 비용을 포함)

다. 기숙사 또는 현장사무실 내의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비, 기숙사 방역 및 소독·방충비용

라.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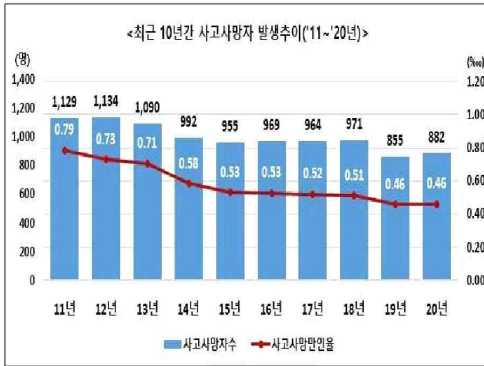
8. 본사 사용비

2-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비교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관할부서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목적	근로자의 보건안전	시설물의 안전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현장기술자
정의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고 이를 안전관리비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표고 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냐, 시설물의 안전에 쓰이는 비용이냐에 따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다.

2-4. 2020년도 산업재해 현황분석



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 했고 사고사망 자는 19년 역대 최초로 800명대 진입했었으나, 20년 이천화재사고 등 영향으로 27명 증가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전반적 감소세로 이어져 20년은 19년 과 같은 0.46‰으로 나타났다.

2-5. 설문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및 목적

설문조사 대상은 현재 건설현장에 재직중인 현직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0부의 설문지 응답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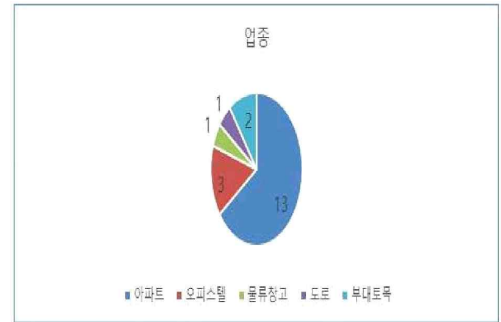
설문조사의 목적은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문제점, 건설현장 추락사고 관련 의견,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시행에 대한 인식 등을 수집하였다.

설문지의 객관식 질문에 대한 답은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고, 도표 해석에서는 매우 동의(10점), 동의(7.5점), 보통(5점), 비동의(2.5점), 매우 비동의(0점)으로 점수를 측정하였고, 결과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분석하였다.

1) 설문응답자의 정보

설문에 응답한 안전관리자들의 건설관련

경력과 업종은 다음과 같다.



2) 데이터 관련 동의 정도

[설문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증가할수록 사고가 감소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공사관리비와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3] “현재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효율로도 충분하다 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목적의 사용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 라는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5]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현재보다 여유있게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6] “다른 업종에 비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어느정도 동

의하십니까?”

[설문 7] “건설현장에서 안전난간의 원인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8] “건설현장에서 작업발판의 원인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9] “건설현장에서 안전대 착용으로 추락사고를 100% 예방 할 수 있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10]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사용으로 추락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1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에서 시행되면 안전관리자의 처우가 더 좋아질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13]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안전관리 관련 투입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1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관리자의 책임 부담이 증 가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설문 15]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만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가지만 서술해 주십시오.



설문1) 에 대한 동의 정도는 8.7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금액에 비례해서 사고율이

감소한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내년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증액 및 사용으로 어느정도 산업재해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설문2) 에 대한 동의 정도는 8.5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시 공사관리비와 상충(충돌)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금 집행시 부서관마찰이 어느 정도있을 수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현직 안전관리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명확한 사용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3) 에 대한 동의 정도는 5.3으로 현재 공사금액 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로는 집행 금액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공사금액 대비 안전관리비의 부족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일률적인 요율보다는 공사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설문4) 에 대한 동의 정도는 7.7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목적외 사용이 어느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정말 모르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제도 개발이 시급하다.

설문5) 에 대한 동의 정도는 9.5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보다 훨씬 많은 안전관리자가 배치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단계적으로 안전관리자 의무 선임 공사금액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설문6) 에 대한 동의 정도는 9.8로 건설현

장에서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의견에 매우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추락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가기때문에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설문7) 에 대한 동의 정도는 8.8로 추락사고의 원인 중 안전난간대 미설치/선험체 등 난간 관련 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안전난간대가 중요한 시설물임을 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거나 먼저 해체해서 종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설문8) 에 대한 동의 정도는 7.9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중인 작업발판도 추락 사고의 다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과 가장 밀접한 도구/장치가 작업발판이다. 불안전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설문9) 에 대한 동의 정도는 9.5로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후 안전고리 체결만으로도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안전벨트 착용 후 고리체결한 작업자와 그렇지 않은 작업자들의 사고율은 크게 차이남을 알 수 있다.

설문10) 에 대한 동의 정도는 9.1로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 설치가 추락 사고를 현저히 감소 시킴을 알 수 있다. 최근 일정금액 이상 공사 현장에서는 시스템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설문11) 에 대한 동의 정도는 7.5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처우개선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책임만 커지고 처우개선은 미미하다라는 의견이 있다.

설문12) 에 대한 동의 정도는 6.9로 처벌에 중점을 둔 법 시행이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꼭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듯 실제 현장에서 다수가 공감할 만한 제도가 필요하다.

설문13) 에 대한 동의 정도는 8.1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관련 비용의 증가로 안전예산이 대폭 증가함을 예상 할 수 있다. 이는 안전인력 및 시설비의 증가로 사고율을 감소 시킬 수 있다.

설문14) 에 대한 동의 정도는 9.2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면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책임 부담이 가중 될 거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설문15) 대표적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로는 스마트폰 추락 관리 시스템 도입, 고소 작업전 근로자 안전모 전자 태그 부착, 안전고리 미체결시 경고음 울림, 전자 낙하물 방지망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다.

3.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제자리 걸음중에 있는 건설업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기업(건설업) 예산에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용 편성을 통해서 건설업 산업재해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해 형태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재해는 복합적인 재해 보다는 일차적인 재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일차적인 재해는 안전한 작업장 조성 및 안전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업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 하고자 8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산업 재해를 감소시킨 좋은 사례가 있다. 본 제도는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서 실정에 맞는 형태로 변화해 왔으며, 건설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편성 및 사용, 안전관리자를 통한 예산 집행, 해당 기관(고용노동부)의 정기적인 감독을 통해서 건설업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가 감소한다는 부분이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1988년을 시작으로 27차례 개정을 통하여 실정에 맞게 변화해 왔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현장과 미 발생현장의 법적 기준 대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은 28%, 39%로 나타났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현장에서 높은 비율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 편성을 보면 산업재해 미발생현장은 33%, 산업재해 발생현장은 18%의 낮은 편성률을 보였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은 산업재해를 감소 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기업 예산에서 안전보건 관련 비용으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낮추거나, 방호조치를 견고히 하거나,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 하거나, 신규자 채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수록, 사고 발생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인지 할 수 있었다. 법적인 기준을 맞추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집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단지 법적 기준만을 맞추기 위한 안전보건비용 사용 외에 해당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사업장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산업 재해를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건 사업주의 안전우선 마인드와 적극적인 안전보건 비용 투자만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다 안전한 작업장 조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편성되면 전문적인 안전보건관리자가 집행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공사를 담당하는 공사부서나 비전문 인력이 집행한다면 안전이라는 이름하에 공사성 위주의 투자, 목적외 사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자를 통하여 비용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절차를 거쳐 안전보건관리 비용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 감독 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에서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제정 및 법적 기준을 수립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련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과 포상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관련 비용은 줄이게 마련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부분때문에 법적 기준을 간신히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예산 증액, 안전인력 증원 등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기업은 정부 차원에서 커다란 포상과 이익을 주어야 한다. 안전 우수기업 인증을 해준다든지, 입찰시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재해를 줄여가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20.1.23. - 고시 제2020-63호)
2.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3.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4. 고용노동부, 2018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5. 고용노동부, 2017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6. 고용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7. 산업안전보건법령집. 예문사. 2020
8. 윤영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력 강화에 대한 연구”. 2018
9. 이연수, 박용규.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14
10. 산업안전사고예방지침, 산업재해제로운 동본부. 2005
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0. 10. 1.] [법 률 제 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12.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강경원.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4
13. 이철성.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보건활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2019
14. 민승기.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 원인 및 유형에 대한 연구. 2020
15. 기정훈. “빅데이터 기반의 국가전략이론에 관한 연구”. 2017
16. 변상철.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개선방안. 2015
17. 김명현.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정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88
18. 김용한. 건설현장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실태 분석. 1997
19. 김승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실태 조사 연구. 2016
20.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20
21.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2018